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44호 2020. 1. 2.(목)

공 고

○ 사천시 공고 제1호 급경사진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-----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644호

사천시 공고 제2020-1호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,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“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” 지정을 위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1항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0. 1. 2.

사 천 시 장

1. 목 적 :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 사면의 유실,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이 우려됨에 따라,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·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2. 행정예고 기간 : 2020. 1. 2. ~ 1. 22. (20일간)
3. 의견제출 기간 : 2020. 1. 2. ~ 1. 22. (20일간)
4. 공고방법 : 사천시 공보, 홈페이지 및 게시판(www.sacheon.go.kr)
5. 관련근거
 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(재해위험도평가 등)

사 천 시 공 보

제644호
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-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(주민의 의견청취)

6. 의견제출

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천시청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기한 : 2020년 1월 22일까지

다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055-831-6036)

라. 제 출 처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(사천시청 재난안전과)
(우편번호) 52539

마. 문의처 : 사천시청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(033-831-3316)

바.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7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

지역명	위 치	지정개요			지정 사유	비고
		유형	등급	면적(m ²)		
통창공원	경남 사천시 동금동 236-1번지 일원	붕괴위험 지역	D	3,310	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유실 및 낙석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·관리 및 정비하고자 함	신규

8. 지정 후 정비계획

지역명	사업시기	사업예산(백만원)	사 업 내 용	비고
통창공원	2020년 이후	3,300	-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L=120m, H=10~20m [소일네일(유망+양카핀) 등]	

※ 사업시기 및 사업예산은 현장여건과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9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(행위 협의)

사 천 시 공 보

제644호

○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호의 행위

가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
나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
다. 옹벽·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

라.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
마.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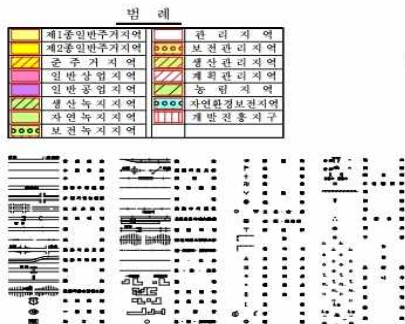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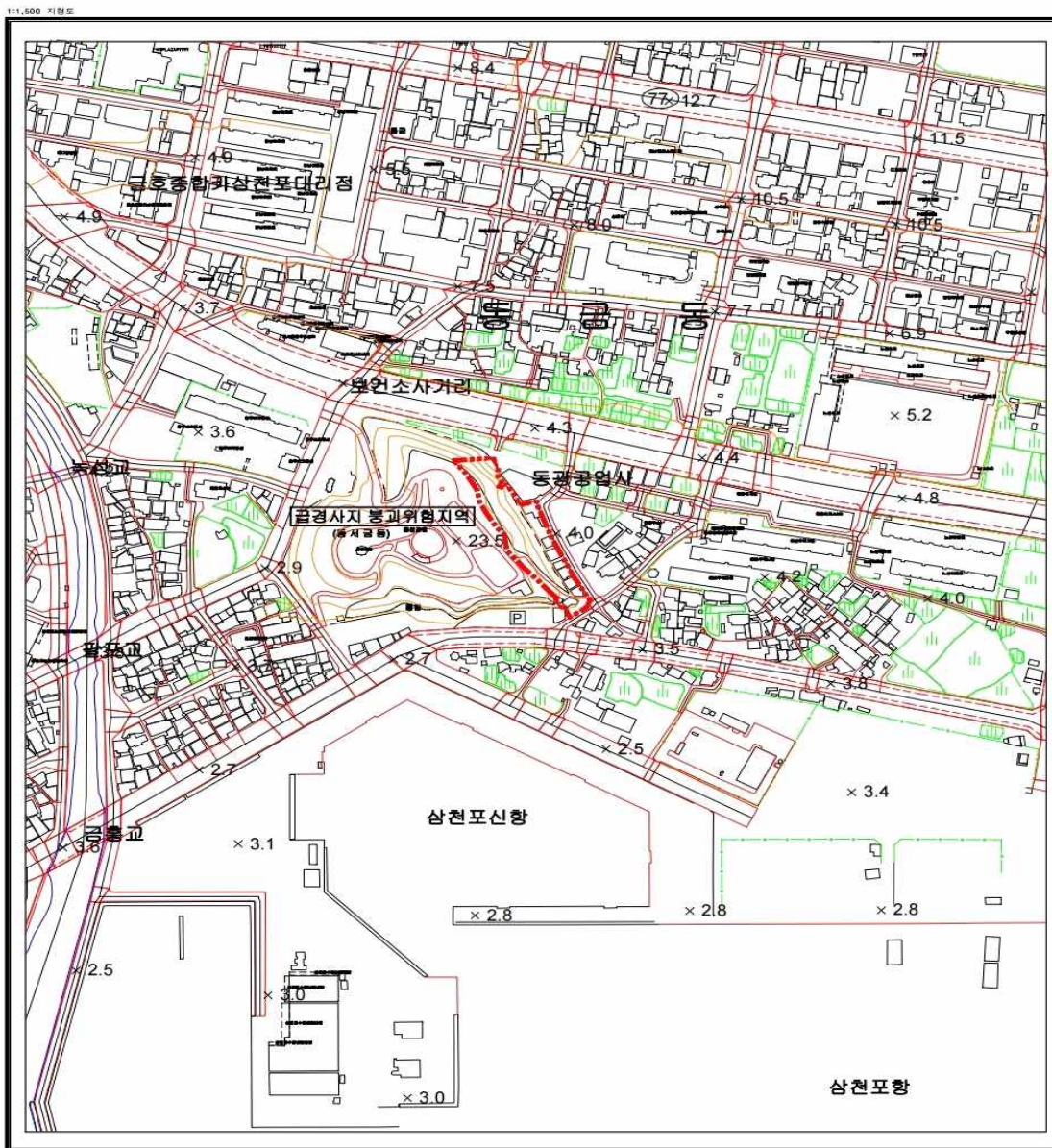
※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,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.

- 붙임 1.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1부.
2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3.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

사천 시 공 보

제 644호

사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지형도면고지도



INDEX

사천 013	사천 014	사천 015
사천 023	사천 024	사천 025
사천 033	사천 034	사천 03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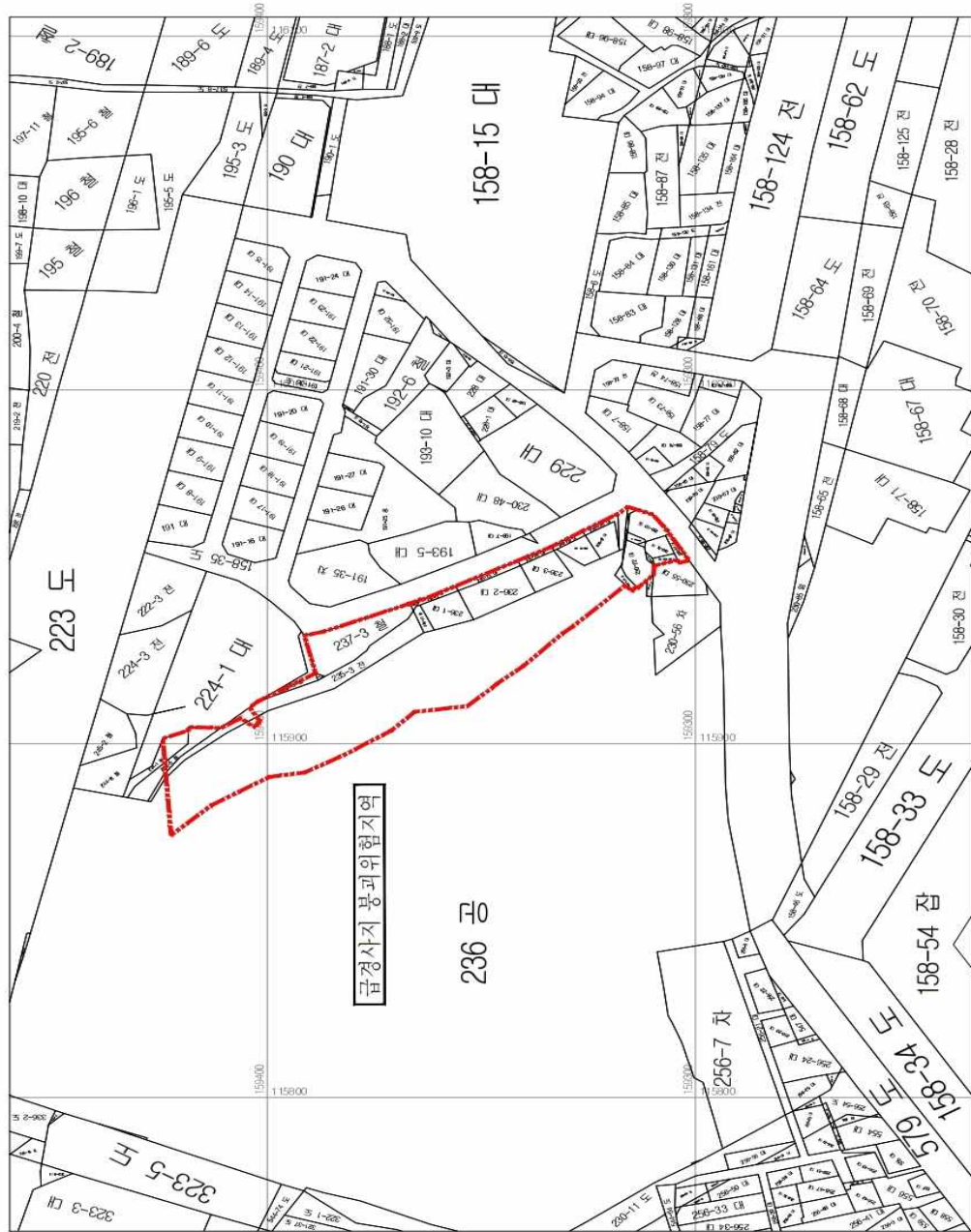
지정권자	사천시장	구분	작성년	1차 확인년	2차 확인년
지정일자	년 월 일	소속	주요담당	기술담당	확인담당
고시번호	년 월 일	위치	책임기술사	책임확인기술사	책임확인기술사
작성번호	사천시 고시 제 - 호	의명	의사	의사	의사
작성자	주식회사 선이	상명	조희재	조현범	최병식
작성년월일	년 월 일	확인일			
제작권소유 및 발행자	사천시				

사 천 시 권 보

제 644 호

통창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지형도면

S = 1 : 1,000 (A3)



도시명 TITLE 지형도면	도면번호
발자 목 2020. 1 1:1,000 (A3)	제작일자 설계자 제도자
SUNIK 주식회사 SUNIK MANUFACTURING SAFETY & TECHNOLOGY CO. LTD	시명 사천시
통창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	도시명 TITLE 지형도면

사 천 시 공 보

제 644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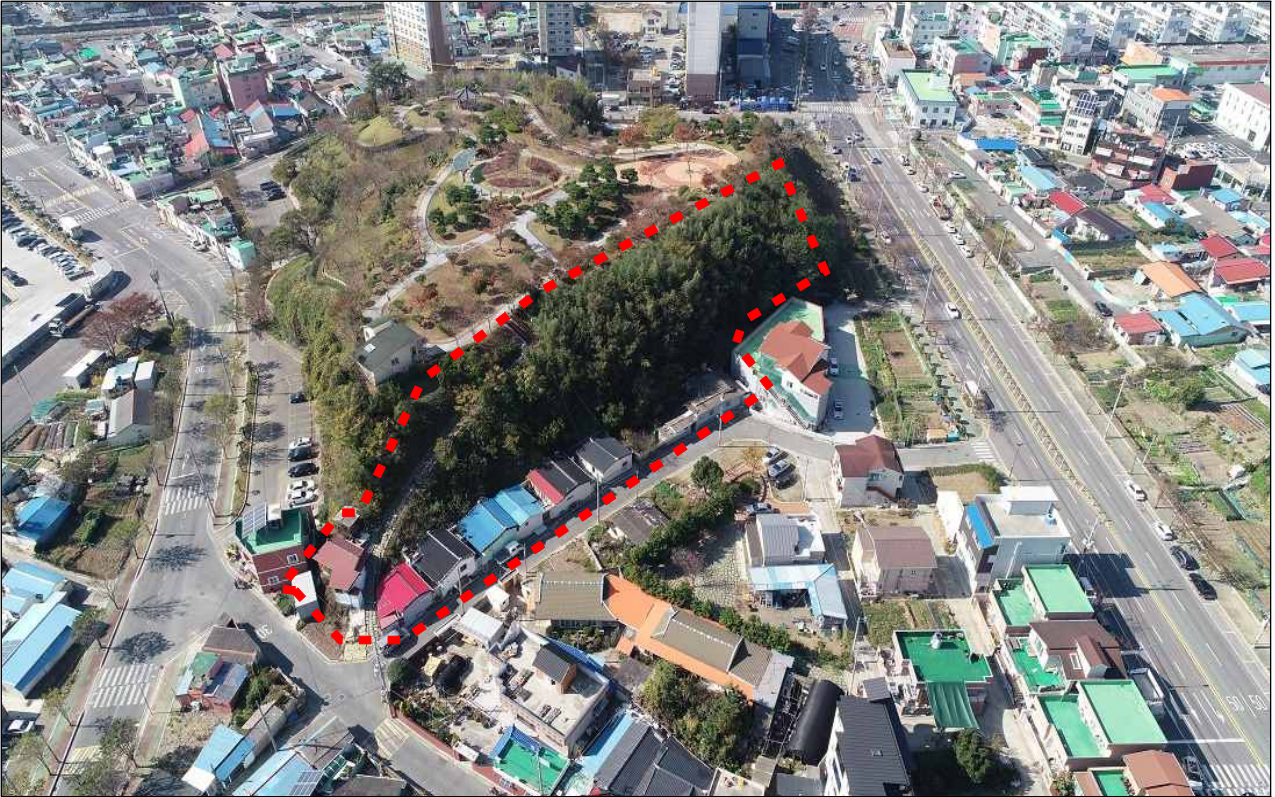
위치도



사 천 시 공 보

제 644 호

현장사진



사 천 시 공 보

제 644 호

현장사진



현장사진



사 천 시 공 보

제644호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통창공원)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사 천 시 장 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